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9. 9. 20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9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9월 1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6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1999년 9월 15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관리과장 황선규)

- 가. 개정이유
 -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함.
 -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→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 -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함
 - 연 8%의 이자율 적용 단,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
 -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례
 -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·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부터 적용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유재한)

1년 이상 도로점용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하게 된 때 분할 납부하게 하기 위한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객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,

- 가. 도로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제4조3항의 내용 중 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”를 지방세법 제41조1호에 해당하는 경우(풍수해, 낙뢰, 화재, 진화(戰禍) 또 수재 도난 등)로 개정하는 안과,
- 나. 도로점용료 납부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41조1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이자율 적용시기와 이자를 연 8% 적용하도록 하는 안으로 이는 도로법 제4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(점용료의 부과·징수)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이나 점용료 분납시 이자율 적용을 8%로 한 것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78조2에서 과오납의 이자환산을 연 8%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납납부의 이자도 이 규정에 적용한 것이라 하겠습니까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9. 9. 9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도로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.
 -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→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- 나.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함.
 - 연 8%의 이자율적용 단,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
- 다.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례
 -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·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부터 적용

3. 관련법규

- 도로법 제43조, 동법 제80조의 2, 동 시행령 제26조의 3, 동시조례 제4조, 지방세법 제41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, 2항
-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【시보2198호('99. 6. 30)게재】개정조례

4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마로붙임 : 1.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2. 신·구조문 대비표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%의 이자를 붙인다.
다만,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례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·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징수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징수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%의 이자를 붙인다. 다만,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